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2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2월 8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2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2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기능상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: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→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추가(안 제2조)
-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구성과 연임 규정 제한 추가(안 제3조 ~ 제4조)
- 위원의 해촉 및 회의 규정 수정(안 제5조,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기능상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제명에 “구성 및 운영”을 추가하여 조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명확히 하였고,
- 안 제1조에서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2조를 조례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였고,
- 안 제3조제1항에서는 “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” 규정하였으며,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, 부위원장은 “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”하도록 개정하였고,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“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”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대한 보안을 하고자 하였으며, 제4항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위촉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,

- 안 제4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에 의거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,
- 안 제7조제4항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.

○ 검토 결과

-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」는 2005년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고자 제정되었으며, 이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(2007.10.26.)되었고, 위원회 운영현황은 2018년 서면 회의 1회 실시 및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운영되지 않았음.
-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재정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·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고자 하였으며, 그 밖에도 제명 및 일부 미비했던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2. .

발 의 자: 유승용, 이성수, 이예찬
최인순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기능상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: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→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- 나.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추가(안 제2조)
- 다.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구성과 연임 규정 제한 추가(안 제3조 ~ 제4조)
- 라. 위원의 해촉 및 회의 규정 수정(안 제5조, 제7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2. 13. ~ 2. 18.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에 따라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”으로, “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
4.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복지국장으로 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

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3항)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촉직 위원은”으로 한다.

3.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

4.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

5.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)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,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삭제

2. 삭제

3. 삭제

4. 삭제

제6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연1회”를 “연 1회”로, “경우와”를 “경우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

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”를 “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서기는 그 업무의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관계기관(부서)”을 “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”로, “제출 기타”를 “제출, 그 밖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<u>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<u>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</u> <u>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신 설> 1. (생략)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2.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제1조(목적) -----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-----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-----. 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. (현행 제1호와 같음) 3.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.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.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<삭 제>

<신 설>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
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
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
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
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복지국
장으로 한다.

<신 설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
청장이 위촉(임명)하되 위촉위
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
로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

<신 설>

6.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
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사항

제3조(구성) ① -----

--- 구성하되, 어느 특정 성별
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
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② -----

----- 위원 중
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
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
위원은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
수행하는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)
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
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
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
자

4.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

<신 설>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5조(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,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

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

5.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삭제

2. 삭제

3. 삭제

4. 삭제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

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은 본인 또는 「민법」 제777조(친족의 범위)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⑤ (생략)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(부서)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---- 총괄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연 1회 -----

----- 경우 또는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회의 위원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-----

-----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서기는 그 업무의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-----
-----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----- 제출, 그 밖에 -----.